

제22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상정

(조례 15건)

거창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7-61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017-62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6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64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7-65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7-66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017-67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29
2017-68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2017-69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2017-70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7
2017-71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55
2017-72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2017-73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1
2017-74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2017-75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6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업무에 대한 군민 신뢰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내용에 위원회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어, 제명 변경함.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조례안의 내용에 맞게 목적규정을 변경함(안 제1조)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부합되게 내용을 변경함(안 제2조)

○ 위원회 명칭 및 조 제목 변경, 위원 수를 규정(민간위원 1/3이상)

라. 조례 내용 중 미비점에 대하여 자구 수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마. 위원회 관련 자구 수정함(안 제5조)

○ 회의 소집 절차 및 미비한 내용 보완

바.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 삭제함(구 조례 제2조·제3조, 제11조~제13조)

○ 기금의 재원·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 근거: 「식품위생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6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8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4. 24.~5. 1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경남도내 개정완료(5): 거제, 김해, 창원, 통영, 창녕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원봉사실장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1명
 - 나.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1명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6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저출산 대응체계,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을 위한 조직정비와 주민밀착형 군정 수행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과소 소관업무 변경함(안 제3조)

- 인구증가시책 추진: 행정과 ⇒ 기획감사실

나.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신설함(안 제3조)

-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5. 11.~5. 3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9호마목 중 “문화원사”를 “문화원사, 목재문화체험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과의 설치) ① (생 략)	제3조(실·과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실장·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 음과 같다.	② ----- -----.
1. 기획감사실장 가.~바. (생 략)	1.----- 가.~바.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사.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행정과장 가.~마. (생 략)	3. ----- 가.~마. (현행과 같음)
<u>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u>	<u><삭 제></u>
4.~8. (생 략)	4.~8. (현행과 같음)
9. 문화관광과장 가. ~ 라. (생 략)	9.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문화센터, 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u>문화원사</u>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마. ----- <u>문화원사, 목재문화체험장</u> ----- -----
10.~13. (생 략)	10.~13. (현행과 같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6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지역공동체사업, 저출산 대응체계, 2017년 사회복지 인력확충안 반영과 대규모 문화관광시설 개장 준비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변동없음

- 현행: 605명(본청266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2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38명)

- 조정: 605명(본청266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0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개혁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5. 11.~5. 3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76	284	14	133 135	69 71	64	54	40	151 149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44	280	14	106 108	42 44	64	53	40	151 149
	4급	1	1							
	4~5급	3	2		1		1			
	5급	35	11	3	5	4	1	4	1	11
	6급 이하	605	266	11	100 102	40 38	62	49	39	140 138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5	2		2	2		1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거창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6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군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계획에 따른 면 기관명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면 기관명 변경함(안 별표)

- 주상면사무소 ⇒ 주상면 행정복지센터
- 남상면사무소 ⇒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5. 11.~5. 3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

기 관 명	소 재 지	개 정 사 유
거 창 군 청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90	
<u>주상면 행정복지센터</u>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	
웅양면 사무소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1431	
고제면 사무소	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14	
북상면 사무소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10	
위천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4	
마리면 사무소	거창군 마리면 빼재로 18	
<u>남상면 행정복지센터</u>	거창군 남상면 인평길 36	
남하면 사무소	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41	
신원면 사무소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67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8	
가북면 사무소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17-16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6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직원 복리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장공무원 규정 삭제(안 제8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17.4.25.)으로 출장공무원 규정(제4조의2) 신설로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으로 삭제함

나. 경조사 특별휴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승인 강화(안 제23조제1항)

- (현행) 공무원은 경조사가 있을 경우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 (변경) 군수는 주어야 한다.

다. 육아시간 남녀공무원에게 부여(안 제23조제4항)

- (현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 ⇒ (변경)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부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한 사람만 가능)

라. 자녀입영휴가 규정 신설(안 제23조제6항)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 그 날 1일 휴가 부여

마. 격무, 주요 공적에 따른 특별휴가 규정 신설(안 제23조제7항)

- 재해·재난 등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경우 등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 허가

바. 공무원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 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 규정 신설함(안 제23조제8항) ※ 성별영향분석 결과 반영

사.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를 경남도내 지자체와 맞춤(안 별표 4)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현행) 2일 ⇒ (변경) 3일

아. 장기재직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종전조례(조례 제2248호)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제7조의3제1항·제2항·제7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그 밖에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5. 02.~5.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안 제23조제8항)

(6) 전국 개정현황: 격무, 주요 공적에 따른 특별휴가 규정

- 경남(밀양, 산청, 함양), 서울시, 경기도, 광역 지자체 대부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무원인 경우 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23조에 제6항·제7항·제8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그 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1.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⑧ 공무원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 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거창군 조례 제2248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이 조례에 따른 장기 재직휴가 일수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장공무원) ① <u>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u> ② <u>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u> ③ <u>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u>	<삭 제>
제12조(복장 등) ① (생 략)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u>공무원증규칙</u>」(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국가공무원 복무규칙</u>」 ----- -----
제23조(특별휴가) ① <u>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u> ②~③ (생 략) ④ <u>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u> ⑤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u>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무원인 경우 한 사람만 해당한다.</u>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u>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그 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u>
<신 설>	⑦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u>

현 행	개 정 안
	1. <u>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u> 2. <u>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u> 3. <u>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신 설></u> 부칙(조례 제2248호, 일부개정 ‘15.6.10.) <u><신 설></u>	⑧ <u>공무원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 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u> 부칙(조례 제2248호, 일부개정 ‘15.6.10.) <u>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적용례)</u> <u>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본다.</u>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u>3</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u>3</u>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6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 등 수정함(안 제1조·제3조·제5조)
- 나. 군수가 위임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함(구 제7조)
- 라. 상위법령 중복·재기재에 불과한 위원회 규정 삭제(구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조·제6조, 「자동차등록령」 제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4. 16.~5.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 현황

○ 입법예고: (5개시) 거제시,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5개군) 하동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함안군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거창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창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2017~6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17.3.28.시행)함에 따라, 「거창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소액 군세범위를 정함(안 제2조)

○ 납세고지서 1매당 50만원 이하

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거창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 이관(종전 조례 제7조 ⇒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4. 16.~5.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제정 현황

○ 입법예고: (6개시) 거제시,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양산시
(5개군) 하동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함안군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세의 수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거창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거창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6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지방세기본법」(‘13.1.1.)이 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에 일반적인 위임조례의 형식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자료제공 및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7항 위임사항

다.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한도·신청·방법, 환수를 정함(안 제3조~제8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위임사항

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위원회 기능, 구성, 제척·기피·회피,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나. 예산조치: ‘17년도 예산 8,500천원 기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3. 29.~4. 1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별지 서식에 성별항목 추가함)

(6) 도내 개정완료: 거제시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2조 제7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서에 관련 증명서류 첨부
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에 관련 증명서류 첨부
-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고등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신고자등이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를 신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군수는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군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

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는 등의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3조제2항 본문의 경우
 -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3항의 경우: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등 1건당 30만원(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본다)
2. 1인당 월 100만원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2조제4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등과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기간,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기간,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
2. 법 제14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 해당 지방세 징수가 완료된 후에 지급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 시

③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2.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상별 포상금 지급대장

제10조(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인정
2.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 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재무과장, 경제교통과장이 된다.
-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정보 제공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1. 정보 제공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주 소:					
2. 정보 제공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					
3. 제공 정보 내용 ※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제 보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주소:					
2.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남/여)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사업장소재지:					
3. 은닉재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별지 제3호서식]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구 분	건 수	금 액 (원)			포상금 (원)
		본세	가산금	계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자료 신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창의적인 제안, 제도 개선 등 특별한 공적					
숨 은 세 원 발 굴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남/여)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

첨 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이 아닌 경우 건수만 기재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연월일	징수자		체납자				징수명세				지급일	포상금 지급액	담당 확인
	직급	성명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주소	연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illegible]

※ 구분란에는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숨은세원 발굴 등을 표시할 것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3조제2항 본문의 경우
 -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3항의 경우: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작 성 자 재 무 과 장 신 영 수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6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민법」 개정('13.7.1.)으로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함에 따라 지난 '15.12.10. 조례를 개정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개정민법 시행 전('13.7.1.)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행정자치부 법령부적합 기획정비과제(전국689건)

2. 주요내용

가.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함(안 조례 제2297호 부칙 제2조)

-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민법(법률 제10429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 개정 2011.3.7. 시행 2013.7.1.>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4. 18.~4. 3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정비대상(23): 정비완료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조례 제2297호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조례 제2297호, 일부개정 ‘1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신 설></u>	부칙(조례 제2297호, 일부개정 ‘15.12.10) <u>제1조(시행일)</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u> <u>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u> <u>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u> <u>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u> <u>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u> <u>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u> <u>되는 것으로 본다.</u>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70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권고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중복·재기재 사항을 삭제함(종전 조례 제2조~제4조, 제8조·제9조·제11조·제13조)

○ 기금의 재원, 장기예치금액, 회계관리, 회계공무원, 위원회 심의사항,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68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9조·제13조

「지방회계법」 제46조

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정함(안 제2조)

○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발생 이자: 군금고에 예치·관리하고, 해당연도 잔액은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관리

다.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별표)

○ 지역별 재난 특성을 반영하여 기금의 세부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11.9.9.시행)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8조)

○ 위원의 자격·수·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 직무, 회의 등

○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68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75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3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5. 1.~5.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조례 개정현황

- 완료(14): 거제, 진주, 김해, 밀양, 양산, 의령, 통영, 고성, 남해, 산청, 창녕, 함안, 창원, 합천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발생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거창군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잔액은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3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제4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재무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재난 및 기금운용 관련 민간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수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는 위원 정수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 되고 있는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 되고 있는 거창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별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제3조 관련)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가.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 나.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 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 및 자재 구입, 장비의 임차·구입
 - 라. 군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 마.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군 소유·관리 시설물 보수·보강, 철거
 -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 사.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 가. 자동우량정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예보·경보시설
 -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설, 지진가속도계측 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
 - 다. 재난감시용 CCTV 등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나.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 다.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6.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등
 -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9.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가.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물자, 자재의 구입 및 장비 임차·구입
 - 나. 감염병 방지 선별 진료소 설치·운영, 방역용품 및 자가 격리자 지급 생필품·위생용품 등 구입
 - 다. 가축전염병 방지 이동통제소·소독시설 설치·운영(인건비 포함) 등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 가. 상담인력 인건비 및 활동비
 - 나. 상담관련 출장경비 및 물품 구입비 등
11.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17~7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소방재난 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2조)

-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나. 지원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한정

라.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지원 신청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선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8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17년 예산 3천만원 추경 확보예정('18년 본예산 편성)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5. 01.~5.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별지서식에 성별 항목 추가함)

(6) 전국 조례 제정 현황

○ 제정(4): 산청군, 정선군, 군위군, 공주시

○ 입법예고(1): 태백시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전에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거창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화재 취약계층”이라 한다)가 거주하는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지원범위)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지원범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 청소년 가장 ☐ 장애인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다문화가족 ☐ 그 밖에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직급 성명 (인)			
지 원 분 야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지원신청수량		개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비
 - 관련조문: 제2조,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 비용		30	30	30	30	30	150
세출	국 비						
	군 비	30	30	30	30	30	
	소계	30	30	30	30	30	150

3. 관련 의견

-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은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생활 안전을 향상시키는 최소한의 기초소방시설인 만큼 화재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대한 설치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소방시설법」 제8조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을 우선설치 대상으로 정하여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비: 30백만원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이 건 호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7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과 설치 목적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함

- (현행)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 ⇒ (변경)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명칭 변경함(제1조, 제4조~제6조, 제8조·제9조, 제12조, 제14조~제16조, 제18조·제19조, 제22조~제24조)

- 통합지휘소 ⇒ 통합지원본부
- 통합지휘소장 ⇒ 통합지원본부의 장

다. 현장지휘관 규정 삭제함(제2조제3호, 제2장 제목, 제7조, 제8조제2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4.12.30.개정) 제16조제4항 현장지휘관 규정 삭제(법 삭제 이유: 법 제52조에서 재난현장 긴급구조 활동에 관한 현장지휘를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삭제, 통합지원본부의 설치목적이 지휘⇒지원·수습으로 개정된 내용과 의미 상통)

라.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목적 변경함(제1조·제2조, 제16조, 제23조)

- 총괄·지휘 ⇒ 총괄·지원 및 조정

마.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편성 변경함(안 제5조제3항)

- (현행) 3개반(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지지원반)
- ⇒ (변경) 8개반(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행정지원반, 언론대응반, 유관기관지원반, 유형별대응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5. 1.~5.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조례 개정 현황

○ 완료(5): 김해시, 사천시, 하동군, 창녕군, 산청군

○ 입법예고(2): 양산시, 통영시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총괄·지휘”를 “총괄·조정 및 지원”으로,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총괄·지휘”를 “총괄·조정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3조 중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한다.

제2장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을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을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를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합지휘소 내에 중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을 “통합지원 본부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행정지원반, 언론대응반, 유관기관지원반, 유형별대응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는 현장책임자로 구성한다.

제6조, 제14조 조 제목 및 제1항·제2항, 제23조 제목 및 본문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통합지휘소장”을 각각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를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장”를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휘소장”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중 “총괄·지휘”를 “총괄·조정 및 지원”으로 한다.

제23조 중 “통합지휘가”를 “총괄·조정 및 지원이”로 한다.

제24조 중 “제5조제2항·제3항”을 “제5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거창군 <u>재난 안전대책본부장</u>이 재난현장을 <u>총괄·지휘</u>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u>통합 지휘소</u>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u>총괄·지휘</u>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생략) 3. “<u>현장지휘관</u>”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장(이하 “통합지휘소장”라 한다)</u>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거창군 <u>재난 안전대책본부의 장</u>(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4. (생략) 제2장 <u>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u> 제4조(<u>통합지휘소 설치·운영</u>)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u>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u> 제1조(목적) ----- -----재난 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총괄· 조정 및 지원 -----통합 지원본부----- ----- 제2조(정의) ----- ----- 1.----- ----- 총괄·조정 및 지원-----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 ----- ----- -----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재난 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 ----- ----- ----- 1.~4. (현행과 같음) 제2장 <u>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u> 제4조(<u>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u>) ① ----- -----

현행	개정안
발생시,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 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u>통합지휘소</u>(이하 “<u>통합지휘소</u>”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u>통합지휘소</u>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5. (생략) 6. 신종 <u>전염병</u>의 최초 발생 및 법정 <u>전염병</u>이 집단 발생된 경우 7.~8. (생략) <u>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u> ② <u>통합지휘소</u>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7. (생략) ③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u>통합지휘소</u> 내에 <u>종합상황관리반</u>, <u>현장조치지원반</u>, <u>긴급복구지원반</u>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제3항에 <u>의한</u>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u>제6조(업무연락관 파견)</u> 본부장은 <u>통합지휘소</u>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u>통합지휘소</u>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 ----- ----- -----<u>통합지원본부</u>-----<u>통합지원본부</u>----- ② ----- -----<u>통합지원본부</u>-----. 1.~5. (현행과 같음) 6.-----<u>감염병</u>----- <u>감염병</u>----- 7.~8. (현행과 같음) <u>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u> <u>① 통합지원본부는 현장책임자로 구성한다.</u> ② <u>통합지원본부</u>----- ----- 1.~7. (현행과 같음) ③ ----- ----- -----<u>통합지원본부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행정지원반, 언론대응반, 유관기관지원반, 유형별대응반</u>----- ④-----<u>다른</u>----- ----- <u>제6조(업무연락관 파견)</u> -----<u>통합지원본부</u>----- ----- -----<u>통합지원본부</u>----- ----- -----

현행	개정안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u>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u> <u>② 통합지휘소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u>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 재난: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 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 하는 부서의 장 <u>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u> <u>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u> <u>② 통합지휘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u> <u>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u> ② (생략) <u>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u> <u>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u>	----- <u><삭 제></u> <u>제8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u> <u>보) -----통합지원본부 -</u> ----- ----- ----- ----- <u>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u> <u>지원본부의 장</u>----- <u><삭 제></u> <u>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u> <u>본부의 장</u>----- ----- ----- ② (현행과 같음) <u>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u> <u>지원본부의 장</u>----- ----- ----- ----- <u>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① --</u> -----

현행	개정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통합지원본부-----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 통합지원본부----- -----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 ----- ----- ----- ----- ----- 통합지원본부의 장-----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 ----- ----- -----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의 장----- ----- ----- ----- ----- 총괄·조정 및 지원-----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 응급의료소의 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 ----- ----- ----- ----- ----- 통합지원본부의 장-----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의 장----- ----- ----- ----- -----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생략)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u>통합지휘소장</u>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휘소 철수) <u>통합지휘소장</u>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u>통합지휘가</u> 필요없게 된 경우, <u>통합지휘소</u>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u>통합지휘소장</u>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10. (생략)	② <u>통합지원본부의 장</u>----- ----- ----- ----- ----- 제23조(통합지원본부 철수) <u>통합지원본부의 장</u>-----<u>총괄·조정 및 지원이</u>-----<u>통합지원본부</u>----- ----- 제24조(권한의 위임) ----- -----<u>통합지원본부의 장</u>----- ----- 1. 제5조제3항·제4항----- ----- 2.~10. (현행과 같음)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7~7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거창목재문화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구성: 15개 조문

나.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휴장일, 관람 및 운영시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정기 휴장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 운영시간: 3월~9월: 09:00~18:00, 10월~다음해 2월: 09:00~17:00

라. 체험료 및 이용료, 감면 및 반환기준을 정함(안 제7조~제11조)

○ 목공체험프로그램 체험료(별표 1), 시설 이용료(별표 2)

마. 행위 및 이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바.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7조

「지방자치법」 제136조·제139조·제144조

나. 예산조치: '17년 1회 추경예산 66,627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3. 21.~4.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거창목재문화 체험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13-2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2. 목공예 체험,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등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목공예 제품 등의 제작·판매 및 전시·홍보
4. 그 밖의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

제4조(시설)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시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2. 체험시설: 초급·중급·고급체험장, 유아체험실, 영상관
3. 편의시설: 중정(쉼터),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
4. 그 밖의 시설: 운영사무실, 야외놀이기구 등

제5조(휴장일)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장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2. 임시 휴장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체험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체험료) 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체험장에 단순 입장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

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체험료와 별도로 실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이용 절차 및 이용료)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기획전시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신청서를 군수(제13조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1개월 이상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체험료·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체험료의 감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별표 1에 따른 단체요금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6.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체험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험료 및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체험 또는 이용 시작 전에 취소한 경우: 체험료 및 이용료 전액
2. 신청자가 체험 또는 이용 중에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의 체험료 및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자가 체험 또는 이용을 하지 못 하게 된 경우에는 체험료 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행위 및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3.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
5.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6. 반려동물을 동반(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 7. 그 밖에 체험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2. 시설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관리 및 운영) ①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강사) 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공 체험프로그램 체험료(제7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체험시간	체 험 료		비 고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대 품 (기계작업)	4시간 기준	3,000	2,000	※ 작품 1점당 체험료
중 품 (공구작업)	4시간 기준	2,000	1,500	
소 품 (단순작업)	4시간 기준	1,000	500	

※ 체험시간인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체험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다.
2. 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3. 이용객 중 인솔자(부모 포함)는 무료 입장할 수 있다.
4. 위 체험료는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한정하며,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지한다.

[별표 2]

시설 이용료(제8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이용기준	이 용 료	비 고
체험시설	4시간	50,000원	
	1일	100,000원	
기획전시실	1일	100,000원	

1. 체험시설은 이용시간인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이용료 100,000원의 범위에서 시간당 10,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체험시설 및 기획전시실의 이용료 감경은 다음과 같다.
 - 가. 5일 이상 이용 시: 20퍼센트 감경
 - 나. 10일 이상 이용 시: 30퍼센트 감경
 - 다. 20일 이상 이용 시: 50퍼센트 감경
3. 체험시설은 목재관련 교육, 체험 및 문화행사,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용시간동안 일반 체험이용객은 그 이용을 제한한다.

[별지 서식]

시설 이용 신청서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남/여)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남/여) (서명 또는 인)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 []에는 이용하려는 시설에 √표를 합니다.			
	목공체험실(초급)	목공체험실(중·고급)	기획전시실	그 밖의 시설
	이용인원			
	이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이용료 감면사유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이용료를 감면받는 경우 필요한 증명자료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운영·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손해배상금 등
- 관련조문: 제1조, 제11조, 제1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구분							
세출	도비						
	군비	66.6	150	150	150	150	666.6
	소계	66.6	150	150	150	150	666.6
총 비용		66.6	150	150	150	150	666.6

3. 관련 의견

-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목재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017년 하반기(7월~12월) 운영비: 66,627천원
 - 인 건 비: 14,127천원
 - 일반운영비: 46,500천원
 - 기 타: 6,000천원

작성자: 산림과장 이 응 록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7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필수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현행 가로수 위원회를 그 위임취지와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 근거 없는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삭제하여 불편·부담없는 조례로 개선·보완하고자 함.

※ 행정자치부 위임조례 정비과제

2. 주요 내용

가. 위임 근거 법조문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
(안 제1조)

나. 위원회 명칭 및 기능 변경함(안 제4조)

○ 명칭: 가로수위원회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 심의사항 추가: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 제거하는 사항

다. 위원회 구성 관련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 삭제하여 군수의 권한 침해 소지 없앴(안 제5조)

라. 법률 위임 없이 조례에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법령 위배 소지가 있어 삭제(안 제14조제3항)

○ 근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 삭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4. 18.~5. 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 없음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에 따라”를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와”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중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부위원장은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림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제6항 중 “가로수업무”를 “도시림등업무”로 한다.

제14조 조제목 “(부담금의 강제징수)”를 “(부담금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가로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식재수종 4. 가로수의 양적·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안 5.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계획 등 7.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가로수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거창군 가로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가로수(녹지, 조경 포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군의회 의원	제1조(목적)-----제20조의 2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와----- <삭 제>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중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로수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협약)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 1.~6.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5. (생략)

제11조(식재기준) ① (생략)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④ (생략)

제13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부위원장은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림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협약) ① -----

도시림등업무-----

1.~6. (현행과 같음)
② -----도시림등업무-----

1.~5. (현행과 같음)

제11조(식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도시림등업무-----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비용부담) ① -----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업무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14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2.30.)

③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도시림등업무-----

-----도시림등업무-----

②~⑤ (현행과 같음)

⑥ -----

---도시림등업무-----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부담금의 징수) -----

<삭 제>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75	제 출 자	거창군수
----------	---------	-------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규제완화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군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없애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위임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제3호 단서) ※ 행자부 법령위임조례 정비

○ 영업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음식류를 조리·판매하지 아니하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은 제외) 또는 일반음식점

나. 상위법 위배소지 조항 및 재기재 사항 삭제함.(안 제9조제5항, 제13조 제4항·제5항,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1항)

※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4. 5.~4. 2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 거제시,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함안군, 함양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의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음식류를 조리·판매하지 아니하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은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제8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 중 “수수료는”을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3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제2항 및 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할 것

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립·운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2. (생 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u><단서 신설></u>	제2조(정의) 1.~2. (현행과 같음) 3. ----- ----- ----- ----- -----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음식류를 조리·판매하지 아니하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은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4.~6. (생 략)	4.~6. (현행과 같음)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③ (생 략)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이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후단 삭제>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② (생 략)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확인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 ----- ----- -----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삭 제>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삭 제>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법 제15조-----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 략)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군수는	<삭 제>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따른 발생 억제 계획, 처리방법 등을 이행할 것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 대장을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제38조제1항,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할 것	1. 법 제15조의2제2항 및 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할 것 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등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삭 제>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